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확인신체검사 시 진료기록 등 질병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23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치료기록 등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생략) <u><신설></u>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

현행	개정안
<신설> ②·③ (생략)	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병역판정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현역병 중 질병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¹⁾를 할 수 있음.

1) 「병역법」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2항²⁾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확인 신체검사 전에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기록, 치료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은 병역판정검사 시의 자료 요청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³⁾하고 있음.

<확인신체검사 제도 개요>

- **(개 요)** 「병역법」 제77조의2에 따라 필수치료 중단자 등 의심자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통한 병역면탈 색출·예방하는 제도
- **(기대효과)** 추적관리를 통한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성실이행 제고
- **(대 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처분자 중 병역면탈 의심자
 - △ 병역면제자(5~6급)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자
 - △ 계속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38개)임에도 치료 중단자
 - △ 그 외 병역면탈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보 등)

• (추진실적)

(’12 ~ ’24.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사실관계 조사 결과		확인신체검사 결과			
		조사중	기처분 인정	소계	동일신체등급	송치	조사중
계	9,770	29	9,344	397	301	89	7
자격면허취득	2,739		2,694	45	38	7	
계속치료대상	6,822	26	6,620	176	162	9	5
제보 등	209	3	30	176	101	73	2

* 자료 : 병무청

-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 3)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그러나, 실제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자료 요청 근거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신체검사 수행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확인신체검사 시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자료의 종류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 자료 제출 협조 기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절차인 확인신체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 확인신체검사 시 자료 요청 협조 기관 범위에 관하여 현행 법령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개정안은 약 처방·조제 내역 등의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 및 군 복무 중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자료 요청 협조 기관으로 추가 하였음.

<신체검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비교>

구분	병역판정검사 (현행법률)	확인신체검사 (현행 시행령)	확인신체검사 (개정안)
자료 제출 기관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병역판정검사 시 자료제출기관 및 자료 범위를 준용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u>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u> <u>각 군 참모총장</u>
제출 자료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u>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u> <u>심사자료 등</u>

- 또한,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확인신체검사 시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⁴⁾ 또한 병행되어야 하는데, 본 개정안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에 제출⁵⁾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확인신체검사 수행 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자료 요청 가능 기관의 범위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 및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에서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 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5) 본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선영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025)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2024.12.30.)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07